

전기공사업

■ 업무내용

1. 발전 · 송전 ·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 보수 · 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공제조합

2025.05.13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기본 출자 좌수
전기공사업	363,660원	1.5억원	단순예치 : 3,700만원 이상 조합가입 : 7,2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3.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4. 기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 4. 1. 이후부터 적용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용융,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	전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국가기술자격자	<p>[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한 사람</p> <p>[고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p> <p>[중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p> <p>[초급]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학력 · 경력자	<p>[중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p> <p>[초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p>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